

| | | | | |
|---|-------------|------|---------------|-----|
|  | 규정 | 문서번호 | TWP-D103 | |
| | | 제정일자 | 2013. 06. 12. | |
| | 학점은행제 운영 규정 | 개정일자 | 2018 05. 04. | |
| | | 개정번호 | 1 | 페이지 |

목 차

- 제1장 총칙
- 제2장 입학
- 제3장 수강과 등록
- 제4장 수업 연한
- 제5장 휴학, 복학, 제적
- 제6장 수료, 학위수여
- 제7장 교육과정, 수업, 성적
- 제8장 장학금
- 제9장 보칙
- 부칙
- 별첨

| | | | |
|------|-------|------|---------------|
| 작성부서 | 평생교육원 | 제정일자 | 2013. 06 .12. |
|------|-------|------|---------------|

| 구 분 | 작 성 | 검 토 | | | | | 승 인 |
|-----|-----|--------|------|------|--|--|-----|
| 직 책 | 담 당 | 평생교육원장 | 기획처장 | 사무처장 | | | 총 장 |
| 서 명 | | | | | | | |
| 일 자 | | | | | | | |

| | | | | |
|---|--------------------|------|---------------|-----|
|  | 규정 | 문서번호 | TWP-D103 | |
| | | 제정일자 | 2013. 06. 12. | |
| | 학점은행제 운영 규정 | 개정일자 | 2018 05. 04. | |
| | | 개정번호 | 1 | 페이지 |

[전문개정 2018.05.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점”이라 함은 교육부에서 평가 인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습단위 또는 일정 자격 취득 시 그 자격에 상응하여 인정되는 학습단위 등을 말한다.
2. “학점은행제”라 함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3. “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4. “학습과목”이라 함은 제3호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5. “평가인정”이라 함은 제4호에서 규정한 학습과목에 대하여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표준교육과정”이라 함은 평가인정의 기준·학점인정의 기준 및 학위수여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7. “교수요목”이라 함은 제4호에서 규정한 학습과목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의 일반적인 개요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입학

제4조(학습자 모집) 매 학기 학과(전공) 또는 과목별로 학습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단, 본원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 | | | | |
|---|--------------------|--|------|---------------|
|  | 규정 | | 문서번호 | TWP-D103 |
| | | | 제정일자 | 2013. 06. 12. |
| | 학점은행제 운영 규정 | | 개정일자 | 2018 05. 04. |
| | | | 개정번호 | 1 |

제6조(지원 서류) 학위과정에 입학(수강)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편)학원서 1부
2. 반명함 사진(3*4) 3매
3. 주민등록등(초)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검정고시출신자는 합격증명서) 1부
5. 기타 필요하다고 원장이 지정한 서류

제7조(전형 방법) 서류 및 면접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전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입학 허가) ① 입학 허가는 원장이 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하고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절차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수강과 등록

제9조(등록 절차) 학습자는 매 학기 등록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강신청) ① 학습자는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교육원에 직접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수강 학점은 연간 42학점(한 학기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강생은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④ 수강신청자라도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수강신청은 무효 처리 된다.

⑤ 수강신청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등록금의 반환) 등록금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환불 조치한다.

| | | | | |
|---|--------------------|------|---------------|-----|
|  | 규정 | 문서번호 | TWP-D103 | |
| | | 제정일자 | 2013. 06. 12. | |
| | 학점은행제 운영 규정 | 개정일자 | 2018 05. 04. | |
| | | 개정번호 | 1 | 페이지 |

제12조(학습과목의 폐강) 수강신청 접수 결과 수강 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인 과목은 폐강 할 수 있다. 단, 수강 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원장이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은 폐강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수업 연한

제13조(수업 연한) 각 과정의 수업연한은 학기별로 한다.

제14조(수업 일수) 수업일수는 15주(각 과목당 4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교육부의 평가인정 결과에 의하여 15주 이하로 수업 일수를 조정 할 수 있다.

제5장 휴학, 복학, 제적

제15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각 과목 총 수업시간의 5분의 1 이상을 등교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유서와 함께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② 건강상 수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원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 군입대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할 수 있다.

제16조(휴학기간) ① 휴학한 사람은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1년 이내로 하며, 총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휴학기간은 입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복학) 휴학한 사람이 복학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 할 수 있다.

제18조(복학생의 수강료) 등록을 필하고 수업일수 2분의 1 이전에 휴학한 학습자가 복학할 때에는 복학하는 학기의 수강료는 납부한 것으로 한다.

제19조(제적)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습자를 제적할 수 있다.

1. 매 학기 소정기한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한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행실이 극히 불량하여 다른 학생의 수업에 방해를 주는 자

| | | | | |
|---|--------------------|--|------|---------------|
|  | 규정 | | 문서번호 | TWP-D103 |
| | | | 제정일자 | 2013. 06. 12. |
| | 학점은행제 운영 규정 | | 개정일자 | 2018 05. 04. |
| | | | 개정번호 | 1 |

4. 본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5. 정신질환의 발생으로 수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6. 기타 정상적인 교육원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6장 수료, 학위수여

제20조(수료 및 수료증) 본원에서 학점은행제의 해당 과목을 80%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그 수료를 인정하고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21조(학위수여) 80학점을 취득하고 이 대학교에서 48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7장 교육과정, 수업, 성적

제22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정한 표준교육과정 중 본원에서 평가 인정받은 교양 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편성하되 별도 특강 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23조(수업관리) 교·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학사일정 준수
2. 강의계획서에 의한 강의 진행
3. 수업 결손 및 조기 종강 불허
4. 강의시간 임의변경 및 변칙 운영 불허
5. 조교, 대리 교·강사 등에 의한 수업 및 실험실습 금지

제24조(휴강과 보강) ① 국경일 또는 학사일정에 따른 공식적인 휴강 외에는 휴강할 수 없다.
 ② 교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휴강할 경우 사전에 보강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해당 학기 종강 이전에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학습자의 출결석) ① 교·강사는 매주 또는 매 시간 출석을 점검하고 출석부에 출결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출석부 기재 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담당 교·강사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③ 지각, 조퇴 3회시에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학습자가 본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하되 이 경우에

| | | | | |
|---|--------------------|--|------|---------------|
|  | 규정 | | 문서번호 | TWP-D103 |
| | | | 제정일자 | 2013. 06. 12. |
| | 학점은행제 운영 규정 | | 개정일자 | 2018 05. 04. |
| | | | 개정번호 | 1 |

도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2. 병무에 의한 결석
3.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 회합
4. 각종 국가자격시험
5. 각종 대회출전 및 특별 훈련
6. 본인의 결혼
7.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8. 기타사항: 이외 별도의 기준이 없을시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 의함

※ 입원 외 질병은 공결 처리 불가

제26조(과목 성적) 과목별 성적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기타(수업태도, 수업기여도, 과제물 등)로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준수 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제27조(성적 평가)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별표 2와 같은 기준으로 한다.

제28조(성적 부여 및 학점인정) ① 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야만 해당 과목에 대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과목 성적이 6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③ 학습자가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하여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중간고사로 기말고사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성적부여는 평가문항의 난이도 관리를 위하여 평가인정신청서의 내용을 준수하되, 20명 미만의 수업 등 부득이하게 정규분포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 성적분포 비율을 증감할 수 있다.

제29조(낙제과목 이수) 낙제된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제8장 장학금

제30조(장학금)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근면 성실한 학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 | | | |
|---|--------------------|--|------|---------------|
|  | 규정 | | 문서번호 | TWP-D103 |
| | | | 제정일자 | 2013. 06. 12. |
| | 학점은행제 운영 규정 | | 개정일자 | 2018 05. 04. |
| | | | 개정번호 | 1 |

제9장 보칙

제31조(준용)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별표 1] 출석성적 부여기준

[별표 2] 상대평가(평점 평균 환산) 기준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입학원서

[별지 제2호 서식] 수료증

[별지 제3호 서식] 학위증서

[별표 1]

출석성적 부여기준(제11조 1항 2조 관련)

출석점수 20점 만점인 경우

| 출석률 | 점수 | 출석률 | 점수 |
|--------------|----|-----------------------|----|
| 100%(15회 출석) | 20 | 80%(12회 출석) | 14 |
| 93%(14회 출석) | 18 | 79% 이하 (11회 이하 출석) | 과락 |
| 87%(13회 출석) | 16 | | |

[별표 2]

상대평가(평점 평균 환산) 기준(제11조 2항 관련)

| 등급 | 취득점수 | 평점 | 학습자 비율 |
|----|----------|------|---|
| A+ | 95점 이상 | 4.50 | 90 ~ 100점 20% 이하 80 ~ 100점 60% 이하 |
| A | 90 ~ 94점 | 4.00 | |
| B+ | 85 ~ 89점 | 3.50 | 단, 위의 각 비율은 과목 특성 등의 사유로 수강 생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정 가능 |
| B | 80 ~ 84점 | 3.00 | |
| C+ | 75 ~ 79점 | 2.50 | |
| C | 70 ~ 74점 | 2.00 | |
| D+ | 65 ~ 69점 | 1.50 | |
| D | 60 ~ 64점 | 1.00 | |
| F | 60점 미만 | 없음 | |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12조 관련)

| 구 분 |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 제23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제23조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비 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

교육원 제 - 호

수료증

성 명 :

생년월일 :

수강과목 :

위 사람은 에서 학년도 학기에 시행한 학점은행제 강좌를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원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공 :

위 사람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2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원 대 학 교 총 장
(2 년 제)

학위등록번호 : 동원대-학점○○○○-○○○○